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72호, 2020.3.31. 제정, 2021.4.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안 제3조)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시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체계,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나.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1)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함

2)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함

다.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안 제5조)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에는 생명존중의 중요성, 고독사 현상의 이해와 예방,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 방법, 고독사위험자 응급상황 대처 방법,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함

라. 상담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안 제 6조)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할 수 있으며,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우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1.15.~ 2021. 2.24.) 예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지원기관은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3 조(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체계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방안

3.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기발견, 상담·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 4 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조(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존중의 중요성
2. 고독사 현상의 이해와 예방
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 방법
4. 고독사위험자 응급상황 대처 방법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의 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서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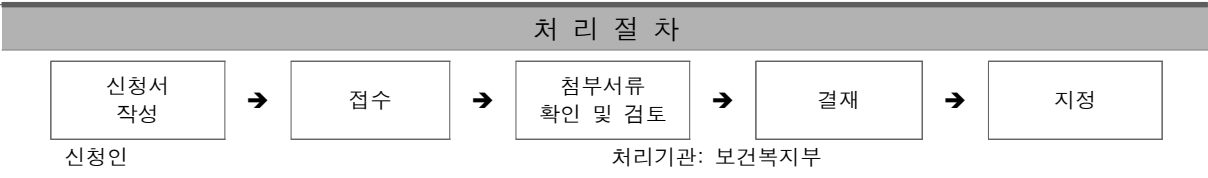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실적 6. 그 밖에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서

1. 전문 조사·연구 기관 명칭:
2. 전문 조사·연구 기관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전문 조사·연구 분야:
5. 지정 유효기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u><신 설></u>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제2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지원기관은 별지 제1호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u><신 설></u>	제 3 조(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신 설>

및 치료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체계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방안
3.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기발견, 상담·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 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신 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
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
무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
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상담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존중의 중요성
2. 고독사 현상의 이해와 예방
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 방법
4. 고독사위험자 응급상황 대처 방법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
교육의 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신 설>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살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3893